

의정정보

2007 - 7

7. 11

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4
3. 최근 타 시도 제정조례	34
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47
<부록> : 행복한 책읽기	55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TBS TV서울 시민영상공모전 개최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TBS TV서울’은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지방자치 정보 및 각종 생활, 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산하의 교통방송에서 개국한 케이블TV 채널입니다.

‘TBS TV서울’은 2006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제작 영상물을 공모해 방송하는 ‘시민영상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공익채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행사명 : TBS TV서울 시민영상공모전

2. 행사일시 : 2007년 11월 30일(예정)

3. 행사내용

- ‘시민영상공모전’은 타 방송사에서도 진행하는 방송고유의 행사로서 장르 및 내용제한 없는 일반, 대학생, 청소년 부문의 참신한 시민제작 영상물을 공모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시민 영상축제임.

- 선정된 우수작품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열린TV 우리의 채널’에 편성하여 정규방송 실시

4. 유권해석 요청 내용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되는 지속적인 행사로서 수상자에게 교통방송본부장 명의로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시상내역 : 상금 총 10,000,000원/ 1인당 40~100만원/ 15명 (2007. 6. 29.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제작 영상물을 공모하고 우수작품에 대하여 상패 및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상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중에는 수상자와 그 가족 등 관계자 외에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시상식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7. 7.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② 정당의 다른정당소속 후보자 지지표명 관련

《질 의》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진한국당에서는 12월 대선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기에 타당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07년 7월 중에 수많은 당원 앞에서 타당후보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지?
2. 2007년 7월 중에 지지후보를 초청한 자리에서 그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한다는 공식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
3. 지지선언후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지지후보를 위해 어떠한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한지?

(예) 현수막, 지지후보명함 돌리기, 세미나 기타 등 (2007. 6. 27. 선진한국당 질의)

《답 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자회견·당원집회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수막·명함·세미나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0조·제93조·제101조·제103조 등 같은 법상 제한·금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2007. 7.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시설 보완사업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부는 노인건강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2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를 ('07.10.12~14)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행사를 위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종목별 지역예선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동 행사의 예선전 및 전국대회시 참석한 어르신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수건 등 간단한 기념품 제공시 선거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2007년 보건복지 안내지침'이나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세부계획안'에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선거법상 문제는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의해 지역예선전의 경우 상장이외에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단체(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관협의 등)에 위탁하여 지역예선전을 실시하고 주관단체명으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007. 6. 26. 보건복지부장관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 제공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7. 6.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지방자치단체의 금품제공행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선거가 행하여지도록 노력하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직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상 직무행위 관련 규정(법 제112조제2항4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제4호가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제4호나목)

□ 질의 내용

1. 법령상 직접적인 예산지원 규정만으로 별도의 법령·조례 없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제4호가목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사례1)

【사례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법령상 어느 정도의 위임 근거(예 : ①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유형, ②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유형, ③노인복지법 제4조 유형)가 있는 경우를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법령이 정한 재정지원 기준을 상회(대법원 96추244)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에게 복지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제4호가목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 별도의 조례 없이 지자체 자체계획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례2】 대법원96추244판결 (광주직할시동구저소득생계보호조례안)

「당해 조례안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법령의 장려적 성격의 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을 근거로 또는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근거한 지자체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했을 경우는 - 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지?

【사례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⑤법 제1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4호나목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 해석과 관련하여

【사례4】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 관련 질의 내용

- ♣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에 의거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 재원 및 지급액은 동조례 제9조에 의거 도와 협의하여 분담(도비 40%, 시비60%), 월 3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서는 자체 조례의 제정 없이 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道の 조례에 의해 도와 시·군이 경비를 分擔하되 시·군은 단순 집행작용만 하는 경우에도 시·군 자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

더 근본적으로는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와 같은 개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한 지자체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했을 경우에는 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법령에 의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참고1】 2007. 2. 28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내용

<질의내용>

- 전주시에서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장수수당을 지원하는데 있어 전라북도 조례 (2007.1.1시행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에 의거 대상자를 90세 이상으로 하고, 동 전라북도 조례에 의거 도비와 시비를 투입 9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비용 부담도 조례 제9조에 의거 도와 협의 결정한 바에 의해 비용(도비40%, 시비 60%)을 부담하여 지원하는 것임.

- 전주시 자체 조례의 제정 없이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 참고사항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는 지급대상이 되는 장수어르신의 연령을 하향(80세 또는 85세 등)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한 경우에는 자체 시군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으나, 도조례에 정한 연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시군은 자체 조례의 제정없이 도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붙임 :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1부).

<답변내용>

- 위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아닌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나목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품제공행위“의 규정과 같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한 사항임.

- 공직선거법상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이 있는 만큼 상급기관인 도의 조례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관계로 시명의로 지급시 공직선거법 위반됨.
- 즉 전주시 조례를 제정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참고2】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제정 2006. 12. 8 조례제32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어르신들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라 함은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어르신 지원 대상자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① 장수어르신의 지원액은 월 30,000원으로 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지원액을 금전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또는 이용권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장수어르신 지원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신청 및 방법) ①장수어르신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신청서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 확정하고, 지급대상 인원을 매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수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④제7조에 의한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한다.

제7조(지급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없게 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수어르신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비용 부담) 이 조례에 의한 장수어르신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도지사는 장수어르신의 지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제외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 조치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관리

제12조(민영 경로우대제도의 확산보급) ①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하는 등 각종 경로우대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경로우대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 5. 8. 행정자치부장관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의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에서 말하는 ‘법령’이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목적이나 방향 등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위 답 1과 같이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이 아닌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

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금품제공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관내 시·군이 장수어르신 지원금품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그 지원금품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시·군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07. 5.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부령제1564호, 2007.7.6공포]

1.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78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몰수농산물 등의 인수 및 처분절차,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몰수농산물 등의 인수 및 처분절차 마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 (1) 법률의 개정으로 세관장 등으로부터 이관 받은 몰수농산물 등의 인수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몰수농산물 등은 처분대행기관의 장이 인수하도록 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은 소각·매몰·매각·공매 또는 기부の方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매각·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보관 및 처분에 소요된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공매대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 (3) 세관장 등으로부터 이관받은 몰수농산물 등의 인수 및 처분방법을 명확히 하여 몰수농산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제11조)

- (1) 법률의 개정으로 농수산물의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유통조절 명령의 객관적인 발령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은 품목별 특성, 예상 가격 및 예상 공급량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는 자는 유통조절명령요청서(안)을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상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함.
- (3) 유통조절명령의 발령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제19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 (1) 법률의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 등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등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매시장법인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계약서,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며, 이를 법인인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함.

- (3)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출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림부령제1563호, 2007.7.4공포]

1. 개정이유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17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 중 축사의 부속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352호, 2007. 4. 11.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이 규칙의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축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구체화(안 제3조)

- (1) 법률의 개정으로 농축산물 생산시설 중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축사의 부속시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축사의 부속시설을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등 당해 축사에서 가축사육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 정함.
- (3) 축사의 부속시설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에 대한 농지 여부의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축소(안 제37조제1호 단서)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되어 있어 농지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2)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전용가능한 시설로 인정하여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3)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농업생산과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 신설(안 49조)

- (1)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2)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서 정함
- (3)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 관련 사항을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0155호, 2007.7.3공포]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069호, 2006. 12. 20.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감협의체의 설립 신고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제1항)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제1항)

시·도 상호간이나 교육감 상호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분쟁의 조정 필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안 제8조)

교육감이 전국적으로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설립취지, 협의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0147호, 2007.7.2공포]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8170호, 2007. 1. 3. 공포, 2007. 7. 3. 시행)되어 내진설계 설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를 추가하고, 해일위험지구를 지정하여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대응·복구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직권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의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신설)

- (1) 매년 폭풍해일·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해일에 대한 조사·연구, 해일피해경감 계획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학적인 해일대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2)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하수도 역류 현상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직권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에 따른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요건 등(안 제32조의2 신설)

- (1)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댐·저수지,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피해 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외부 전문가가 대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업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업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업무,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등에 대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등을 정함.
- (3) 전문적 기술과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방재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절차 등을 정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설)

- (1) 자연재해 피해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복구대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역

량이 부족하여 피해 원인의 분석 및 기술검토가 미흡하므로 국가차원의 지도·지원대책이 필요함.

- (2) 피해특성이 기존 피해유형과 상이하야 복구공법, 기술개발보급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복구비가 50억 이상인 사업을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선정하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3) 효과적인 복구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인력 수급 여건, 기술수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지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재해복구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0142호, 2007.6.29공포]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안 제13조 및 별표 3)

- (1) 법률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휴직·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轉職)·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3) 합리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0조제3항 및 별표 7)

- (1) 법률에서 종전에 벌칙으로 부과하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보고·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 (3) 합리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 부개정령 [대통령령제20117호, 2007.6.28공포]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전문자격 인정을 확대하고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69호, 2007. 1. 26. 공포, 2007. 2. 27. 시행)됨에 따라, 자격인정에 필요한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 근속자, 노령자 또는 장애인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대별 지원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안 제2조)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정수가 증원됨에 따라 위원자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2) 여성가족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도 위원이 되도록 하며, 민간위원의 자격을 정함.
- (3)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무연고(無緣故)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등의 실시 및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28조 및 제29조)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의 실시 및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보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각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3)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분야 자격을 소지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근속자·노령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취업보호기간의 연장(안 제34조의2제1항 신설)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취업보호기간의 연장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한 자, 노령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3) 취업보호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 고용관계를 유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0131호, 2007.6.28공포]

1. 개정이유

차상위자에 대하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2006. 12. 28.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상위자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안 제5조의3 신설)

- (1) 차상위자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급여대상 및 지급금액 등 급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차상위자에 대한 장제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장제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를 하도록 함.
- (3) 수급자에 속하지 아니하나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활에 필요한 자금 대여 및 지급 방식 개선(안 제17조)

-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등 자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확대하고, 소액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3) 수급자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급자에 대한 창업지원(안 제21조)

- (1) 수급자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창업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의 지도 등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3) 수급자의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안 제21조의2 신설)

- (1)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주택 구입·임차,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3)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21조의4 신설)

- (1)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중앙자활센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
- (3) 자활사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바.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안 제26조)

- (1) 수급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

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업자금 용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0116호, 2007.6.28공포]

1. 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7398호, 2005. 3. 24. 공포, 2006. 3. 25. 시행)되어 대안학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력인정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안 제5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나. 학력인정 학교의 지정(안 제6조)

교육감이 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수준 등을 평가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업일수,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의 교과 별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체 도서를 사용할 경우 해당 도서를 교육감에게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⑨ 어장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0107호, 2007.6.26공포]

1. 개정이유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의 증대와 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장환경개선 및 어장관리를 강화하고 어장정화·정비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130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및 어장면적·위치의 조정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어장 청소 및 수산종묘의 살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며,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선박·기술인력·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안 제6조)

- (1) 어장환경의 조사결과에 따라 오염의 정도가 심하여 어장휴식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3)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을 통한 어장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어장 면적의 조정 등(안 제9조)

- (1)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어장환경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 면적과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2) 어장환경조사의 결과 어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어장 및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에 대하여 그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어장환경조사의 결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3)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고시방법을 정함으로써 어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안 제10조)

- (1)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설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및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금지하는 시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3) 전문기관과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어장환경기준에 대한 투명성 및 과학적인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산종묘의 살포 및 어장청소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 (1)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살포하거나 어장청소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마을어업의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패류·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 동식물 등 종묘살포가 가능한 품종의 수산종묘를 살포하도록 하고, 어장청소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되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묘의 살포와 어장청소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3) 수산종묘의 살포와 어장청소 등 어장의 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⑨ 양극화 민생 대책위원회 규정 [대통령령제20092호, 2007.6.15공포]

1. 제안이유

빈부격차 등의 양극화(兩極化)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동반성장(同伴成長)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위원회는 양극화·민생 관련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양극화·민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및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과 양극화·민생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운영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 상정할안건을 사전에 협의·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추진상황의 보고(안 제10조)

위원회는 양극화·민생대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최근 타시·도 제정조례

①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2007.5.8의결]

1. 제안이유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이용과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정보접근의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에게는 정보격차문제가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의 이용·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강화하는 등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마.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 제품의 지원,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정보화 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 및 채용의 조달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이 조례에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 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라 함은 정보격차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4. “정보통신제품”이라 함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제공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의 이용·활용 강화
4. 시 정보격차해소 기반 조성

제4조(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목표와 전략
3. 추진체계 및 정보격차해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정보격차해소위원회) ①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 정보격차해소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위원회 시의원,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강화) ①시장은 장애인,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고 컴퓨터(불용 컴퓨터를 수집하여 정비한 것) 등
2. 디지털행정 추진으로 인해 감축된 사무용 정보기기(프린터, 팩시밀리) 등

②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당해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2007.5.8의결]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자치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일반시민 등자전거이용 및 시책관련자별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부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 및 제6조)

- 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9조 및 제10조)
- 라. 자전거 보관소·정비소·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 개발책무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청소년들에게 자전거 이용습관을 들이기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등의 지정·운영과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관과 합의하였음
- 다. 합의사항 : 조직담당관과 합의하였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7. 2. 22 ~ 3. 14) 결과 : 별첨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시장 등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⑤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 2 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주기)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 3 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

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 4 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1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 ⑤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① 지연민원 고객보상제 관련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7월부터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모든 지연민원에 대하여 고객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인터넷민원은 7일, 우편·방문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되지 못한 모든 민원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또는 지하철승차권)을 지급하게 된다.
- 행자부는 행정기관 최초로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고객점점 서비스를 혁신한 결과, 9.3일이던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3.1일로 단축되었고, 전화친절도가 민간 우수기업수준으로 향상되었다.
 - ※ 국무조정실의 전 부처 대상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04년 하위그룹(19위/24) ⇒ '05년 중위그룹(11위/24) ⇒ '06년 상위그룹(6위 이내/25부처)의 성과를 거둠
- 그러나, '06년부터 연평균 13%이상의 민원증가로 인해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연민원 고객보상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행자부관계자(고객만족팀장 김형만)는 밝혔다.
-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민원행정서비스현장에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부처차원의 지연민원 전체에 대한 일괄 보상을 실시하는

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 고객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고객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소관 팀이나 담당자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현실임

- 행자부는 지연민원 고객보상제 전면시행으로 지연민원에 대한 사후적 고객보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고객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지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
『지연처리민원 고객보상제』 실시계획

고객업무 중 처리지연민원에 대하여 고객보상제 (사과서한문, 보상금 톨 실시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고, 지연처리민원을 감축하고자 함

※ 민원행정서비스현장운영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182호) 제11조, 고객만족행정팀장은 고객의 불만족사항에 대해 사실여부확인 후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 민원업무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구 분	법정처리기간	이행처리기간 (민원행정서비스현장)	비고
단순질의 우편민원	7일	6일	약 10% 감축
법령해석 우편민원	14일	12일	
인터넷민원	7일	5일	약 20% 감축

- 각급기관은 민원서비스현장에 의거 민원처리 시 법정처리기간보다 10%를 감축·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민원의 경우 20%이상 감축하고 있음

○ 인터넷민원 처리현황

구 분	'06.1~12月	'07.1~5月	비 고
평균 처리일수	3.1일	3.6일	+0.5일
처리건수(월평균)	3,010건	3,440건	+430건
CRM 고객만족도	89.0점	87.5점	-1.5점

- 전년대비, 평균처리일수는 0.5일 증가, 월평균 처리건수 344건 증가, CRM 만족도는 1.5점 하락추세를 보임

○ 민원 지연처리 실태('07.1 ~ 5月)

- 월평균 지연처리민원(인터넷민원의 경우 5일) 약 200건이며, 이 중 약 74%를 민원격무 4개팀이 차지하고 있음

* 민원 격무부서에서는 민원발생량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민원 담당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지연민원 해소가 시급한 실정임

□ 지연처리민원 고객보상 계획

○ 보상대상: 법정처리기간 초과민원

- 법정처리기간 초과민원(예: 인터넷민원 7일초과)에 대해 보상하되,
- 매월 현황 보고 및 해당 팀 통보 시에는 민원서비스현장의 이행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예: 인터넷민원 5일초과)도 포함

○ 보상내용: 사과 서한문 발송 및 보상금(5천원) 지급

□ 향후 추진일정

- 지연민원에 대한 고객보상제 실시계획 각 팀 통보 : '07.5월중
- 지연민원 고객보상제 실시 : '07.7월 이후(매월 15일)
 - CS팀, 월별 지연민원현황 보고 및 해당 팀 통보
 - CS팀, 고객에게 사과 서한문 발송 및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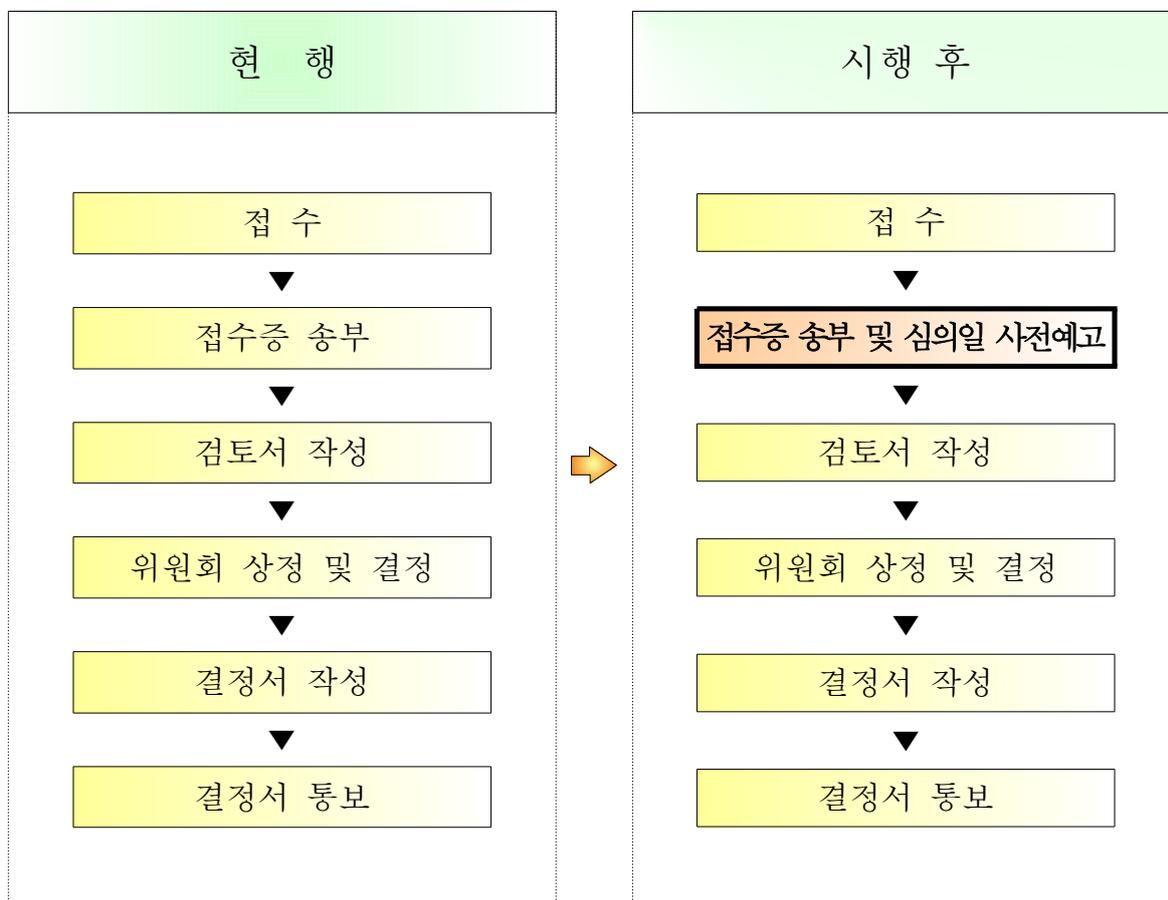
② 지방세 심사청구 심의일 사전예고 관련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2007년 7월 접수분부터 접수증 송부시 당해 청구건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예정일 등을 미리 명기하여 통보하는 『지방세 심사청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 현행 지방세법에서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법정처리 기한인 90일 동안 처리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의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들은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심의예정일 통보 시 심사기간, 관계서류열람, 의견진술 및 소송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며, 자료보정요구 및 추

가검토필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심의예정일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변경된 심의예정일 다시통보 하게 된다.

- 이번 제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제도시행의 여건이 갖추어진 자치단체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표] 심사청구업무 처리 흐름도



③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관련

- 오는 7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옥외광고물의 종류별 현황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1년 이후 6년만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장단기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이 수립·추진될 계획이다.
- 행자부(박명재 장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옥외광고 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사업」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행자부는 간판 정비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15개 시군구 4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행자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 60억원과 산자부의 간판디자인 개발 사업비 40억원, 에너지절약형 간판교체 사업비 50억원을 포함한 1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전선 지중화사업과 연계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 행자부 박재영 본부장은 6월 19일 개최되는 「2007 아름다운 간판 원년」 다짐 결의대회 및 옥외광고 제도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지원방침을 밝혔다.
- 이번 대회는 250명의 전국 옥외광고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아름다운 간판 원년」을 맞아 간판 때문에 훼손된 도시미관을 간판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불법광고물을 추방하여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하며, 도시미관과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달기 문화를

확산하고, 간판에 대한 인식과 의식변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 : 붙임 참조)

- 또한, 지역별 우수사례에 대한 전국 확산·보급을 위해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 제도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6개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에 대한 발표·토론회도 개최되었다.

《 지방자치단체 주요 우수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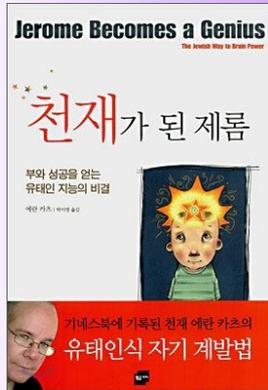
- 길거리 현수막 제로화(부산 부산진구)
- 역사 문화형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천 중구)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관 설치(대전 유성구)
-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울산 남구)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지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경기 화성시)
- 동계 스포츠벨트 가시권역 간판정비사업(강원 횡성군)
- 인·허가 공유 처리로 불법광고물 예방(충남 계룡시)
- 스티커 및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경북 상주시)
-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제주도 제주시)

-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생활의 질 개선과 공간의 품격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청에 부응하여 “공공디자인의 시대”(한양대 윤종영 교수) 와 “간판시범거리 사업 개선방향”(동서울대 이경아 교수)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희망제작소 부설 간판문화연구소와 녹색소비자연대와의 민·관협력 증진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아름다운 간판 원년」 결의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행자부, 지자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간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간판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

진하는 한편, 이번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옥외광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옥외광고 정책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천재가 된 제롬
저자명 : 에란 카츠
출판사 : 황금가지
출판년 : 2007년
페이지 : 389

기네스북에 기록된 기억력 천재 에란 카츠의 유대인식 자기 계발법

1965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에란 카츠는 500자리의 숫자를 한 번 듣고 기억하여 기억력 부문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두뇌 능력 계발 및 향상에 대한 강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 다국적 기업과 기관에서 기억력 증진에 대학 강연과 세미나를 1000회 가까이 진행했다. 모토로라, IBM,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GE, 코카콜라, AT&T, 유럽석유산업협회, 싱가포르 정부, 태국 상공회의소 등에서 강연했으며 20만 명 이상이 그의 워크샵에 참여했다.

책 출간에 즈음하여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초청으로 방한한 저자는 3월 2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일반인과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두뇌 능력의 비밀'을 주제로 한 강연 등의 일정을 가졌다. 유대인 고유의 학습법과 탈무드를 접목하여 더욱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사고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법을 강의한다.

유태인은 똑똑하다? 문제는 혈통이 아니다

‘왜 유태인들은 으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이유는 잘 모르는 이 의문에서 시작한다. 전체 인구의 0.2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20세기 이후 노벨상 수상자 중 45퍼센트를 차지하며, 오랜 시간 질시와 박해를 받아 왔지만 세계 곳곳에서 부와 성공을 함께 일궈낸 사람들. 무엇이 유태인의 성공을 만들어 냈을까? 에란 카츠는 유전자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민족, 성별, 연령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잠재력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두뇌 능력을 확실하게 향상시킬 방법이 있다. 유태인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생활 속에서 이 방법과 원칙들을 실천해 왔다.

에란 카츠는 자신이 연구한 유태인식 두뇌 계발법을 이야기로 전한다. 옷 장수인 주인공 ‘제롬’은 젊은 대학교수 이타마르와 기억력 천재 제롬의 도움을 받아 불가능할 것만 같은 꿈에 도전한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